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6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75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187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2

I.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제221187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31.

다. 회 부 일 : 2025. 8.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1)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은 통상 9개월이 소요되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수행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²⁾될 수 있음.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것으로 1989년 11월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2006년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몇 차례 공간구상계획이 변경³⁾되는 과정을 거쳐 2025년 10월 말 현재에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다른 대형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⁴⁾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훈령)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3) (2007. 4.) 토지이용구상안 → (2008. 10.) 토지이용구상 변경(안) → (2010. 1.) 내부개발 기본구상 → (2011. 3.)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 (2014. 9.) 새만금 기본계획 → (2021. 2.)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것과 달리 현행법은 예비타당성 면제 규정이 없어 새만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용지의 매립·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아울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5)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즉, 「국가재정법」 체계 내에서 국가 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가능성 및 다른 법률·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① 재정 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② 현행 제도 내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며, ③ 새만금사업은 대부분의 SOC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실익이 낮고, ④ 특례 도입 시 유사 요구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90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